

**애틀란타 한인회 제 36 대 선거관리 위원회
한인회장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애틀란타 한인회 선거관리 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과 의무

본 시행세칙은 애틀란타 한인회 회장 선거를 위한 것이며 한인회 회칙에 의거 (이하 회칙이라 한다) 본 선거관리 위원회 (선관위라 칭한다) 를 구성하고, 본 선관위는 본 세칙에 의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는데 그 목적과 의무가 있다

제 3 조 위치와 지역 범위

본 선관위의 관할 구역 범위는 광역 애틀란타 지역 일원으로 한다.

제 4 조 구성

본 선관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 명, 부위원장 1 명, 위원 5 명 (위원장을 포함해 7 명 이하)
2. 선거일 45 일 전에 구성해야 한다
3.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이사진에서 5 명, 이사진 외에서 2 명을 선출한다
4. 위원장은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5. 선관위 위원장은 회계사무와 문서기록을 위하여 간사(선관위원)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선거 중사원을 둘 수 있다.

제 5 조 회의 소집 및 의결

선관위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선관위의 소집은 위원장 혹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6 조 결원과 보충

1. 선관위원의 사표는 선관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표 수리는 위원장이 한다
결원의 보충은 위원장이 24 시간 내로 임명한다
2. 선관위 위원장의 사표는 한인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표 수리도 한인회장이 즉시 해야 한다

- 결석이 된 위원장은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48 시간 내에 선출한다.

제 7 조 선거관리 위원회의 직능

- 선거관리 위원회 세부계획 수립
- 선거 일정 및 투표 장소 지정
- 입후보 등록 (공고, 구비서류 등) 절차
- 선관위 운영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 입후보자 공탁금 관리
- 선거인 (유권자) 등록 및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인
- 투.개표 운영관리 (검표, 산표 등)
- 선거 운동 홍보 (신문, 방송, 기타 등)
- 당선자 확인 공고
- 투.개표조 안전 대책
- 선거 마감과 사후 처리
- 기타 선거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 2 장 입후보자 등록

제 8 조 등록 공고

선관위는 투표일 45 일 전에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 9 조 입후보자 자격

-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만 35 세 이상인 자
- 입후보자는 2 대 회장 재임기간 (4 년 연속: 2020 - 2023) 한인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인 자에 한한다
- 등록일로부터 만 5 년 이상 광역 애틀란타에 계속 거주한 자에 한한다
- 한국이나 미국 정부로부터 집행유예 6 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정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3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후보 할 수 없다
- 전항에 관한 검증은 선거기간 중 선관위가 필요 시 선관위 전원 합의 및 동의 하에 시행한다
(시행 세칙 10 조 3 장)
- 한인 사회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자
- 허위 사실 유포 시 자격 면직

제 10 조 입후보 등록 서류

입후보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고된 기일 내에 마쳐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교부한다

1. 등록 신청서 1 부 (선관위 소정 양식)
2. 이력서 1 부 (선관위 소정 양식)
3. 후보자 소견서
4. 신원확인 동의서: 신원조회 각 1 부 : 미국 - FBI 신원조회, 한국 - 범죄 경력 증명신청서 (영사관)
5. 추천인 명단 200 인 (선관위 소정 양식)
추천인은 년 한인회비를 (개인당\$20) 2023 년 9 월말까지 납부한 정회원에 한하며 이중 추천자는 모두 무효로 한다. (추천인 명단을 Soft File 로 제출)
6. 사진: 여권용 사진 (2 Inch X 2 Inch)을 Digital File (USB, Hard Disk, CD 등)로 제출
7. 여권, 운전면허증, 영주권, 시민권 중 2 개 이상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
8. 입후보자 공탁금은 \$50,000 (Casher's Check 에 한함)을 납부한다
제출처: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the Greater Atlanta
9. 정회원 중에서 입후보자가 정한 선거 대책 담당 1 인과 선거 참관인 10 인 이내의 명단 1 부를 제출한다
10. 공탁금과 서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선관위 소정 양식)
11. 선관위의 결정에 승복 (당락 포함) 한다는 각서 1 부 (선관위 소정 양식)

제 11 조 입후보자 등록 절차

각 입후보자는 해당 서류를 일괄 구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쳐야 한다

1. 입후보자 등록 서류는 회장 1 인 부회장 2 인을 한조로 일괄하여 해당 후보 또는 선거대책 담당이 직접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접수비 (\$1,000)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3. 입후보자 신청 접수 기간은 5 일로 한다
4. 선관위는 접수된 서류를 5 일 이내에 검토하여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해당 후보자에게 등록필증을 교부하며 후보자는 공탁금을 완불한다.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선관위는 의결을 거쳐 이를 해당 후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미비된 서류의 보완을 2 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통지한다.
5. 서면(등록필증) 통지를 받은 후에는 접수된 모든 서류와 공탁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한인회 회칙 45 조 3 항 참조, 시행세칙 우선 한다)

제 3 장 기호 추첨 및 선거 운동

제 12 조 기호 추첨

입후보자 등록 완료 후 24 시간 내에 선관위 위원장은 각 후보자의 선거대책 본부장을 소집하여 선거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주지시키고 기호는 등록 서류를 제출한 순위로 추첨한다

제 13 조 선거 운동

1. 모든 선거 운동은 선관위가 주관한다
2. 벽보, 현수막, 피켓, 전단, 유인물 제작, 언론광고, 홍보물 부착 등의 설치 및 규격과 수량 등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3. 소견 발표 및 좌담회 (신문과 방송토론, 기타) 등은 선관위의 주관으로 한다
4. 선거 운동은 정책과 사회 활동 또는 공직 생활에 대한 홍보 선전에 한하여 개인 신상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비방, 중상모략은 금한다
5. 회장 출마자로서 지도자적이고 품위 있는 선거 운동을 해야 한다
6. 세칙 제 13 조 4 항에 위반된 선거 운동으로 인하여 공명 선거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선관위에서 1 회 위반 시에는 해당 후보자에게 경고하고 2 회 이상일 때는 언론을 통해 공개적인 경고를 할 수 있다
7. 각 후보는 선거 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유권자) 등록 명부 열람을 선관위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 명부 내용의 외부 유출은 할 수 없다
8. 기타 자세한 선거 운동 시행 규정은 부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4 장 투표 및 개표

제 14 조 투표 방법, 일시, 장소

1. 투표는 유권자의 무기명 직접 선거로 한다
2. 투표 일시는 선관위에서 회칙과 시행 세칙에 의거해 공고한다
3. 장소는 선관위가 결정하여 공고한다

제 15 조 선거인 (유권자) 자격과 등록

1. 유권자는 한인회칙 제 2 장 6 조 1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재의 국적을 불문하고 본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 3 조에서 지정한 광역 애틀란타에 거주하는 만 18 세 이상의 한국인과 한국인 편부모의

후손으로 한다

(단 편부모 후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시민권, 영주권 및 기타 증빙서류 지참자에 한함)

2. 선거인(유권자) 등록은 선관위가 정하는 장소에서 공고하는 기일 내에 본인이 직접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관위의 원활한 선거인 등록 업무 및 관리를 위하여 간접 등록도 부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7장 14항 참조)

제 16 조 선거인 명부 열람

1. 선거인 명부는 선거 운동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 복사, 보존, 배포할 수 없다
2. 선관위는 선거인 등록을 마친 선거인 명부를 만들어 비치해야 한다
3. 선거인 명부 열람 일자는 선관위에서 결정하여 공고하며 유권자는 기간 내에 열람 할 수 있으나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열람은 후보자 및 후보자 선거대책 위원회에 한한다.
4. 선거인 명부는 선관위에 정하는 기일 내에 완성되어야 한다

제 17 조 투표 절차

1. 투표자(유권자의 확인)

선거 당일 유권자는 등록필증 및 운전면허증을 필히 지참하되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여권, 연방 혹은 주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등록필증에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등록 명부와 확인 대조 한다

3. 기표 용지 교부

1) 확인 날인을 받은 등록필증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는 등록필증을 투표자로부터 회수하고 기표 용지를 교부하고, 투표자는 기표소로 간다

2) 지정된 기표소에서 투표한 다음 기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퇴장한다

4. 투표 마감(당일 오후 7시)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일 마감 시간까지 투표 장소 정문 안에 들어 선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가 완료되면 선관위원장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각 후보 선거대책 담당 입회 하에 투표함을 봉인하고 개표소로 옮긴다. 투표 장소가 2 곳 이상일 경우 개표장소는 한인회관 1 곳으로 한다

제 18 조 개표 및 참관

1. 선관위원장은 개표소를 질서 정연하게 정리하고 투표함은 각 후보 선거대책 본부장 입회 하에 선관위가 위임한 개표 위원이 개봉하여 각 후보별로 산표한다
2. 각 후보의 선거대책 담당과 참관인 2 인은 개표소의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정 장소에서만 참관한다

- 정정, 이의 보충이 필요한 때는 선거대책 본부장이 선관위원장에게 요구하여 시정할 수 있다

제 19 조 무효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표를 무효로 한다

- 선관위원장의 등록 확인 날인이 없는 것
- 후보의 기표란 밖에 기표한 것

단 선에 걸쳐 기표한 것은 선이 달은 호보표로 하며 기표가 두 후보 사이의 선상에 있을 때는 기표의 많은 쪽의 후보표로 한다

- 기표가 둘 이상인 것
- 기표가 없는 것
- 식별이 불가능한 것
- 선관위가 준비한 기표 용지 (일련번호 포함) 나 기표 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기타 선관위의 결의에 따라 무효표로 판정된 것

제 20 조 당선자 발표

- 개표가 끝나면 선관위원장은 각 후보의 득표수를 재확인하고 총괄하여 공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당선자는 최다수 특표자가 되며 최다수 동일 득표자가 2 인 이상일 때는 추첨으로 한다.
추첨은 추후 선관위에서 결정하여 공지 한다.
- 단일 후보일 때는 선관위 의결을 거쳐 등록 마감일로부터 5 일 내에 무투표 당선을 공고하고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투표장의 질서 유지

- 투.개표장 내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선관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퇴장까지도 명할 수 있다
- 선관위는 필요에 따라 투표 장소를 추가할 수 있다

제 5 장 재정

제 22 조

-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후보자의 공탁금으로 한다
- 공탁금은 선관위가 은행에 한시적인 구좌를 개설하고 지출은 선관위원장 책임 하게 간사와 협의 지출한다

3. 공탁금은 선거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선거가 끝나면 선관위는 한인회장이 지명하는 결산 감사를 필한 후 1개월 내에 결산 내용을 지상에 공고하고 그 잔액을 차기 회장단에 인계 한다
4. 선관위는 최소한으로 선거 비용을 지출하고 적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6 장 선거관리 위원회 해산

제 23 조 해산

선거가 종결되면 선거에 관계된 모든 문서는 한인회로 이송, 보관하도록 하고 선관위는 제 24 조 19 항에 명시된 대로 한인회장의 취임 후 3 개월 후에 해산한다

제 7 장 부칙

제 24 조 선거 운동 시의 시행 규정 및 유권자 등록과 열람에 대한 규정

본 규정은 선거 운동의 과열을 막고 효율적인 선거 관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부 규정을 둔다

1. 선거인 등록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후보 측이 추천하는 3인 이내를 상주시킬 수 있다
(단 선거 등록 장소에 한함)
2. 현수막에 대한 제재: 현수막은 불가 (이유: 미관상 좋지 않으며 과열 경쟁을 유발하고 선거 비용이 과다 지출하게 되는 폐단이 있으므로 제재한다)
3. 포스터는 22" X 36"을 넘지 않는 크기로 제작할 수 있으며 선관위의 사전 승인(도장 및 서명)을 받은 포스터만 부착할 수 있다. 매수는 500 장으로 제한한다. 디자인에 상관없이 후보 사진, 번호, 경력, 이름, 선거 공약, 표어만 게재할 수 있다. 디자인이 끝난 후 선관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브로슈어 제작에 대한 수량과 페이지 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크기는 8.5" X 11"를 넘지 않도록 한다.
5. 피켓의 경우에는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되 크기는 24" X 선 18 을 넘지 않는다.
6. 선거용 홍보물은 개당 단가가 10불 넘지 않도록 한다. 모든 홍보물 제작은 사전에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신문 및 라디오 광고 내용도 선관위의 승인 후에 게재가 가능하며 횟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8. 선거 당일 후보 측의 선거 운동자들은 본인들의 투표 시 외에는 투표소 출입을 제한한다.
선거 물 홍보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투표 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9. 선관위가 주관하는 정견발표 외의 후보 후원 행사와 개인적인 정견발표 모임의 횟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10. 제 13 조 3 항에 관한 언론을 통한 소견 발표 및 좌담회의 경우 후보자가 이용할 언론사명, 일시, 소요 시간 등을 기재한 이용 계약서 사본을 선관위에 제출한다. 이와 별도로 선관위는 공고된 기일에 한인회관에서 정견발표 및 좌담회를 주관한다.
11. 선전 벽보, 유인물, 홍보물을 훼손한 자 및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를 퍼뜨려 다른 후보자에게 영향을 끼쳤을 때 1 차 경고, 2 차 언론 공개, 3 차 법적 고발 조치할 수 있다.
12. 제 7 장 부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선거 운동을 할 경우에는 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13. 제 14 조 3 항 투표 장소에 대한 부칙:
투표장소는 한인회관과 그 외 장소는 선관위가 결정하여 추후 지정 발표 한다.

14. 제 15 조 유권자 자격에 대한 부칙

유권자 등록은 이메일 KAAGAElection36@gmail.com, 팩스 (770-622-2025) 혹은 우편 (KAAGA Election Committee, 5900 Brookhollow Parkway, Norcross, GA 30071)으로 접수 할 수 있으며 ID 를 포함해야 한다 (ID 는 한인회장 투표에 대해서 사용). 온라인을 통한 접수자의 선거인 등록 필증은 선거 당일까지 한인회관에서만 교부한다. 한인회관 외의 장소에서 투표할 경우에는 회관에서 등록 필증을 교부 받은 후 투표가 가능하다. (유권자 등록을 부득히 한 경우 투표현장에서 등록할 수 있다)

15. 유권자 등록은 우편등록도 가능하며 소인에 관계 없이 2023년 10월 20일 오후 5시까지 선관위에 도착한 우편물만 유효로 간주한다.
16. 개표 참관은 선거 대책 담당과 참관인 2인으로 제한하여 각 후보별 총 3인이 참관할 수 있다.
17. 입후보 추천인의 회비 대납을 불허하고 공명 선거를 해치는 지나친 선거 운동에 관해서는 선관위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8. 선거인(유권자) 등록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단 등록 인원수를 1회에 25명 이내로 한다.
19. 선관위는 선거 공고 및 시행 세칙을 위반하여 선관위로부터 3회 이상의 누적 경고를 받은 자의 입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당선 이후 3개월 이내에 밝혀진 위반 사항을 포함하여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당선자도 당선을 무효할 수 있다.

제 25 조 투.개표 시의 시행 규칙

본 규정은 투.개표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규정을 둔다

1. 선관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선거인(유권자) 등록 확인 절차를 선관위원이나 선거위원 (종사자)들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2. 투.개표 시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으며 선관위에서 배부하는 출입증을

필히 적용해야 한다.

- 1) 선관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선관위원장의 허락을 받은자
- 2) 각 후보의 선거 대책 담당과 그 참관인(선거 대책 본부장은 투표소에 한함)
- 3) 투.개표원
- 4) 각 언론사에서 기자 1명
- 5) 선관위가 요청하는 청원경찰과 입회 경찰
- 6) 검표나 산표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산표가 완전히 끝난 다음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검.산표를 할 수 있다.
- 7) 검표나 산표가 끝나고 당선자가 결정되면 선관위원장은 투.개표에 관한 모든 서류 일체를
 각 선거 대책 본부장 입회 하에 투표함에 넣고 봉인하여 한인회에서 보관하게 한다.
- 8) 선관위는 이사회가 경과 보고를 요구할 때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9) 선관위에 비치 보관된 서류(원본, 사본 등)는 어떤 타종의 서류보다 우선 보관한다.
- 10) 부칙과 시행 규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 선거 관례에 준하며 선관위의 의결로 결정 시행한다

제 26 조 효력

본 시행 세칙은 2023년 9월 1일 공고일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27 조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며 세칙의 제정 및 폐기는 선관위의 고유의
업무이며 유권 해석 및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서면 접수되면 즉시 선관위 전체회의 결정에
따라 답변한다.